

공정위,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방지대책 수립·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화) 건설업계 입찰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산업도로 확장공사 입찰담합건」 및 「12개 대형건설업체들의 국책공사 입찰담합건」 등과 같이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방침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이는 입찰제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담합유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인 요인도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동 대책에는 입찰담합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건 등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관련정보를 제출받아 필요시 공정위 직원이 입찰현장에 입회하여 감시하며, 지난 '97년 10월부터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입찰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합의 속성상 명백한 증거 등이 없더라도 담합의 혐의가 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추정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찰담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고액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처벌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하여

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둘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입찰담합의 유인환경으로 작용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상 입찰참가업체 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참여업체 수를 확대하고, 그 동안 도로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식이 업체간 나눠먹기 식 담합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가급적 소규모 분할 발주를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입찰담합 방지의 효과와 함께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일괄발주방식(Turn-Key)의 도입을 확대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조기시행 및 부실업체의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보증제도(Surety Bond)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동 대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시행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으로 있다.

공정위는 동 대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에 경쟁입찰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상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업계의 담합동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와 함께 덤핑입찰 방지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써 “자율조정(즉, 담합)”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불식시켜 경쟁입찰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있다.

<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

낙찰자 결정방법	내 용	적용대상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58.3억원 이상 공사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58.3억원 미만 공사

공정위, 은행업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토)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에 있어서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정리한 「은행업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은행연합회의 회원 은행에 통지하였다.

동 유의사항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실시되어 온 금융자율화로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16개 은행의 환전수수료 담합¹⁾ 등 많은 은행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은행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된 것이다. 동 유의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본 유의사항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예정이다.

동 유의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례」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기준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다른 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리·예금금리·수수료 등을

인상·인하 또는 유지하기로 결정하거나 금리 등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통일을 도모하는 행위, 타은행과 의논하여 영업시간의 통일, 영업점포의 설치 제한, 상품종류의 제한 등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및 타은행과 의논하여 대출금액의 제한·고객의 제한·영업분야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신디케이트론 등 개별 은행만으로는 여신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여신제공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크게 여신과 관계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수신과 관계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였다. 즉, 여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의 체결 등 여신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경영 관여나 쥐기, 중복·과다 채무보증 징구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대출받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었으며, 수신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허위·과장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과다하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동 유의사항의 시행 이후 적발되는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은행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1) 1998. 3.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50호, 사건번호 9802공동0103
 동 심결에 관해서는 공정경쟁 제32호('98년 4월호) p.48 참조